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9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10. 26.

발 의 자 : 전 준 호 의원
외 5인

□ 제 안 이 유

-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 작성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장단 회의(의장, 부의장, 각 상임위원장·간사 회의)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의사일정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단회의(의장, 부의장, 각 상임위원장·간사 회의)에서 협의하도록 함(안 제16조)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절의 제목 “의사일정”을 “의사일정 및 의회운영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의사일정의 작성)”을 “(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 협의)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, 부의장,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·간사 회의(이하 “의장단회의”라 한다)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절 의사일정</u></p> <p>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<u>제2절 의사일정 및 의회운영</u></p> <p>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 협의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, 부의장,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·간사 회의(이하 “의장단회의”라 한다)에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